

**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**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-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-11조(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)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제5-13조의1 본문 중 “법 제115조제1항”을 “법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”으로 하고, 단서 중 “법 제1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”를 “제115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하고, “신고”를 “신고 또는 보고”로 한다.

제5-13조의2 중 “법 제115조제1항”을 “법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”으로 하고, “신고”를 “신고 또는 보고”로 한다.

제5-21조제1항제1호 중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5-21조제1항제2호 중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6-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-11조(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)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에게 재검증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제7-46조제1항제3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,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-11조(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)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.
제5-13조(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)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-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금융위(법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)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-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5-13조(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) 법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-----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----- -----다만, 금융위(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3항)-----신고 또는 보고----- ----- -----.
제5-13조의2(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) 보험회사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별지 12-2에	제5-13조의2(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) 보험회사가 법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----- -----신고 또는 보고-----

다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-21조(외국환포지션의 한도)

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
2.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
<신 설>

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

제5-21조(외국환포지션의 한도)

① (현행과 같음)

1. -----  
-----  
----- 100분의 30-----

2. -----  
-----  
----- 100분의 30-----

제6-11조(책임준비금의 적정성

검증)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재검증할 필

<신 설>

제7-46조(보험상품의 비교·공시

등)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·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단체보험, 일반손해보험(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)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.

- 1. ~ 2. (생 략)
  - 3. 보험회사별
  - 가. ~ 나. (생 략)
- 다.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 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
- 라. (생 략)

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에게 재검증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제7-46조(보험상품의 비교·공시

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  - 3. 보험회사별
  - 가. ~ 나. (생 략)
- 다.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,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 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
- 라. (현행과 같음)